

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가합52248 판결 [구상금 청구 등]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장현철

피고1. B 주식회사

2. C

변론 종결2019. 9. 20.

판결 선고2019. 10.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9. 4. 9.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5. 30.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반창고업, 보세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생활용품 제조·유통·도소매·중개·수출입·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2016. 6. 3. 상호명을 '주식회사 D'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E로부터 사업상 피고 B의 명의를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피고 B 명의로 F 화장품 등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해온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G의 물품 입고

1) 원고는 2016. 5.경 인천 서구 H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개설할 예정이었는데, 개설시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할 물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I은 지인인 J를 통해 피고 C에게 이 사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화주를 물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C은 F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거래처에 공급하여 주는 특판대리점 역할을 하는 K의 직원인 L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할 물품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L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한편, K은 이전에 피고 C을 통해 피고 B와 사이에 F 화장품을

공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2) G는 L을 통해 알게 된 원고가 개업을 앞두고 투자자 등에게 활발한 거래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임치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창고에 G 소유의 물품을 임치하기로 결정하고, 2016. 4. 7. 'M' 360박스를, 2016. 5. 16. N 등 합계 330박스를, 2016. 6. 1. ~ 2016. 6. 3. 'M' 1,053박스(이하 위 물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이 사건 물품 중 2016. 4. 7. 입고된 'M' 360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이 사건 나머지 물품'이라 한다)를 각 입고하였다.

3) 한편, G가 이 사건 물품 중 2016. 4. 7. 입고된 'M' 360박스를 이 사건 창고에 입고할 당시 L은 G의 직원 O에게 원고의 물류담당자이자 이 사건 창고 담당자인 P 부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때 G와 원고 사이에 임치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P은 입고 후 G에게 '발송 G, 수량 360 C/T = 5 P/T, 수령 원고'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L은 2016. 4. 7. 이 사건 창고에 처음으로 'M' 360박스가 입고될 때뿐만 아니라 2016. 5. 16.부터 2016. 6. 3.까지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나머지 물품 중 일부가 입고될 때마다 원고의 P에게 '입고시킨 물품은 G의 물품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고 C의 기망행위 등

1) 피고 C은 2016. 1.경 원고의 Q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M'을 직접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물건을 취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2016. 4. 7. 이 사건 물품 중 'M' 360박스가 이 사건 창고에 입고되었다.

2) 또한 피고 C은 2016. 5.경 L과 함께 R 호텔에서 원고의 이사인 I을 만나 I에게 '피고 B이 K으로부터 F 화장품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과 공동으로 위 화장품을 구매하면 단가를 낮춰 더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다. 위 화장품의 판매는 이미 중국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는 K에서 대행할 것이니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원고에게 수익금 중 4%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I은 피고 C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3) 원고는 2016. 5. 11. 피고 C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행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앞으로 입고될 물품의 대금 14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양사 간 물품공급 및 판매대행에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계약은 피고 B이 원고에게 F 물품을 공급 및 판매대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품명)

피고 B이 원고에게 대행하는 공급 및 판매대행 물품명은 F S 및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한 물품에 한한다.

제3조(공급물량 및 결제)

- 공급 및 판매대행의 물량은 매회 자료로서 첨부한다.
- 결제 : 매회 자료에 첨부된 금액을 원고는 피고 B에게 기합의된 날짜에 입금한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신의와 성실을 다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다하며, 일부 물량으로 담보를 삼는다.

제4조(물품 판매의 수익금에 대한 건)

피고 B이 원고의 판매금을 대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익금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기준은 월 4%로 한다.

2016. 5. 11.

[원고] 주소: 인천 연수구 T건물, U호

상호: 원고

사업자등록번호: V

대표이사: W (인)

[피고 B] 주소: 부산 부산진구 X, 2층

상호: 피고 B

사업자등록번호: Y

대표이사: E (인)

- 피고 C은 양사의 거래에 준하여 피고 B의 책임을 함께하는 자로서 책임을 다한다.

[피고 C] 주소: 부산 부산진구 X, 2층

상호: 피고 B

주민등록번호: Z

사업총괄본부장: 피고 C (인)

4) 피고 C은 2016. 5. 25.경 입고시키기로 한 물품 중 일부를 이 사건 창고에 입고시켰을 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입고될 물품의 내역·수량 및 입고일정 등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다가, 최종적으로 2016. 6. 3.(이 사건 물품 중 'M' 1,053박스가 최종적으로 입고된 날) 'M을 입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뒤에 전화로 '기존에 2016. 4. 7.(이 사건 물품 중 'M' 360박스가 입고된 날)과 2016. 5. 16.(이 사건 물품 중 삼푸 등 330박스가 입고된 날)에 이 사건 창고에 입고된 물품도 모두 자기 것인데, 지금 F으로부터 물품이 제대로 출고되지 않은 상황이니 일단 위 물건들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피고 C은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채무의 담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6. 5. 27. 31,020,000원, 2016. 6. 8. 55,314,000원, 2016. 6. 14. 2,160,000원, 2016. 6. 16.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는데, 그 이후 피고 C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 B에게 직접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였고, 이에 2016. 6. 28. 피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 송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다. 향후 진행되는 물품대금 미납에 대한 변제 진행은 피고 B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출고 거부

G는 2016. 6. 22. AA(홍콩) 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 중 2016. 5. 16. 입고된 N 등

330박스에 관하여 구매주문계약을, 2016. 6. 27. AB(홍콩) 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 중 'M' 1,413박스(= 2016. 4. 7. 입고된 360박스 + 2016. 6. 1.부터 2016. 6. 3.까지 입고된 1,053박스)에 관하여 구매주문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출고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 14. 재차 출고를 요구하는 G에게 이 사건 물품 중 2016. 4. 7. 입고된 'M' 360박스만을 출고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물품의 출고를 거절하였다.

마.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G는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5251호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출고를 거부하여 이 사건 나머지 물품가액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11. 17. '원고는 G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출고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피고 C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출고 요청을 거부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G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228,565,680원인데, 다만 원고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G에게, 피고 C은 228,565,680원1), 원고,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82,852,5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G와 피고 C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658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G와 피고 B 사이에는 2018. 7. 25. '피고 B은 G에게 170,000,000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8. 8. 1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G와 원고 사이에는 2018. 8. 22. '원고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쌍방의 피해 회복 및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 차원에서 G에게 170,000,000원을 2018. 10. 1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8. 9. 13.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원고는 2018. 10. 1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G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F이 제조한 물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마침 G가 F이 제조한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창고에 임치하였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품이 자신이 위 대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만연하게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B 또는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 G의 출고 요청을 거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출고 거절로 인해 G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G가 이 사건 물품 출고 거절로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이 사건 물품 출고 거절로 인하여 G가 입은 손해액을 228,565,680원으로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그 전부의 지급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및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하여 원고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182,852,54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점, 관련 민사소송 2심에서 결과적으로 G, 원고, 피고 B 사이에 G에 대하여 공동하여 1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G에 170,000,000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출고를 거부한 경위, G가 입은 손해의 내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이 사건 물품 출고 거절로 17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책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 2) 원고와 피고 C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의 비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C은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체를 이루어 공동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 나)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C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자신이 공급한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G의 이 사건 물품 출고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창고를 전적으로 담당한 P이 이 사건 물품이 입고될 때마다 L이나 G로부터 이 사건 물품이 원고 소유임을 통지받았음에도, 원고는 실무 담당자인 P에게 이 사건 물품의 실제 소유주 및 보관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대행계약을 통해 매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G의 출고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 중 2016. 4. 7.에 입고된 'M' 360 박스에 관하여는 P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고 이를 출고하여 준 점, ④ 한편, K의 L은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창고에 임치된 이후에 K 소유의 물품도 이 사건 창고에 여러 번 임치시킨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과 K이 입고시킨 물품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출고를 거절한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담 부분은 20%, 피고들의 부담 부분을 80%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원고가 2018. 10. 17. G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7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G에 자신의 부담 부분인 34,000,000원(= 170,000,000 × 20%)보다 136,000,000원(= 170,000,000원 - 34,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채무를 공동으로 면책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G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대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행계약이 피고 B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대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1,4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201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관련 민사소송 제1심 및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행계약은 피고

C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피고 B은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고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대행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9. 4. 9.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142,9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91,494,000원(= 2016. 5. 27. 31,020,000원 + 2016. 6. 8. 55,314,000원 + 2016. 6. 14. 2,160,000원 + 2016. 6. 16. 3,000,000원)을 공제한 51,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142,900,000원을 지급한 날인 2016. 5. 1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4. 9.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5.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중

판사김동욱

판사조소희

- 1)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다.